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49호

「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보유자등 활동(안 제5조)
- 다. 전수교육시설(안 6조)
- 라. 전승지원 등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rhdchfhd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무형유산”이란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.
2. “보유자등”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.
3. “전수장학생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법 제12조,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유자등 활동)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
2.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
3.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·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전수교육시설)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, 교육, 공연,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전승지원 등)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
2.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
3.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
4.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보유자등과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